

지속가능경영위원회 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지속가능경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권한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의안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.

1. 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계획
2. 지속가능경영활동 진행 사항에 대한 보고
3. 주요 리스크 요인 검토 및 관리
4. 기타 지속가능경영 관련하여 위원장 및 각 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

제2장 구 성
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(이하 "위원")의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에서 한다.

제5조(위원장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정한 이사로 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
③ 위원장의 유고 시,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3장 회 의

제6조(소집) 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시,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
제7조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의 소집은 회의일 전일까지 개최시기 및 장소를 위원 및 참석대상자에게 통보한다.
- ②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통지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8조(결의방법)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9조(관계인의 의견청취)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·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10조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 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4장 기 타

제11조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.